

# 한국습지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04년 1월 19일 논문집 편집위원회 의결, 2004년 3월 1일 시행)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습지학회 정관 제 5 조에 의거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계획
  - ㉠ 편집위원회 연간활동 계획
  - ㉡ 편집위원회 관련예산 계획
  - ㉢ 학회지 발간을 위한 논문집 편집 계획
  - ㉣ 상기외 학회지에 관련된 기타사항의 계획
2. 심의
  - ㉠ 상기 1에서 수립된 제반 계획의 수립
  - ㉡ 논문 관련 상의 수상후보자의 심의
  - ㉢ 기타 학회지에 관련한 안건의 심의
3. 편집
  - ㉠ 투고 논문의 심사자 선정
  - ㉡ 투고 논문의 편집
  - ㉢ 기타 학회지의 편집에 관련한 사항

## 제 3 조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분야별로 5명의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습지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술담당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은 습지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경험이 풍부한 습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4 조 (회의)

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 5 조 (심사위원)

1. 접수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 논문 1편당 2명의 심사위원을 분야별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와 적합한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6 조 (심사규정)**

논문의 심사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 **제 7 조 (투고요령)**

논문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

### **제 8 조 (논문게재)**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게재확정일자 순으로 게재한다

### **제 9 조 (논문집 발행)**

논문집 발행 회수는 연 4 회로 하며 발행은 3, 6, 9,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 10 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심의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이 곤란하여 대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원에 포함한다.